

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s of Diligent Search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ions**

이호신 (Hosin Lee) **

초 록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diligent search’ stipulated i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Diligent search’ is to identify the copyright holder and his or her contact information. But the process provided by the law includes many cases in which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dentify the relevant details, and includes unnecessary requirements. So it appears that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is,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text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5-4) and to abolish un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6-3 no.5~8) of the Enforcement Decree.

키워드: 권리자불명 저작물,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 문화시설, 법정허락, 상당한 조사
orphan works, mass digitization, cultural facilities, statutory license, diligent search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부교수(leephs@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 2024년 5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 2024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 2024년 6월 8일

■ 정보관리학회지, 41(2), 131-154,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2.131>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여는 말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가 눈부시다. 챗GPT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선보인 이후,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에 간단한 명령을 입력하면 논문이나 소설작품까지도 직접 작성해 주는 이 놀라운 서비스가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다.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고, 이 새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콘텐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 가운데 도서관 외부에서 그 본문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두 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 또 다른 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애써 발품을 들여서 이용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이용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검색과 활용이 일상이 된 시민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에 그리 집착하지 않는다. 굳이 그 자료가 아니어도 이미 온라인상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상업적인 가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료의 상당 부분이 도서관 담장에 갇혀 사장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진전이 이렇게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까닭에는 아마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도 저작권 처리의 어려움은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도서관 소장자료 대부분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지금까지 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와 온라인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화한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장소는 도서관 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가정이나 연구실에서 디지털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도 예외 없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량의 저작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도서관에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어렵게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했어도,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20년에 실시한 내부 조사에 따르면, 대상 자료 1만 건 가운데 약 22%인 2,234건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 허락이 불가능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이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6). 이런 사정은 비단 국내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도서관에 소장된 출판도서 가운데 17~25% 가량이, 특별컬렉션의 70%가 권리자불명 저작물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대영도서관의 소장 도서 가운데 43% 가량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이라고 한다(Sarid & Ben-Zvi, 2022, 8).

구글은 2002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구글도서(Google

Book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옵트아웃(Opt-out) 방식¹⁾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하지만 작가와 출판사들의 반발에 부닥쳐 오래도록 소송에 휘말리는 내용을 겪어야 했다. 유로피아나(Europeana)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유럽은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유럽 의회는 2012년 「권리자불명 저작물 지침(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내용을 법에 도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법 제35조의 4는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다.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 가운데 '상당한 조사'를 거쳤어도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한 골자이다. 그 내용 가운데 '상당한 조사'는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현장에서의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Schoff, Favale, & Bertoni, 2017; Zeinstra, 2016). 이렇게 되면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이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서비스에 적

극적으로 나서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저작물들은 도서관 울타리에 갇힌 채 여전히 시민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를 형편이다.

이호신과 정경희(2020)는 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신설된 법률 조항의 내용과 '상당한 조사'의 세부적인 요건을 소개하면서, 적용 주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상당한 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진원(2021)은 이 조항이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사'에 대한 부담을 실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2022)은 실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제 '상당한 조사'의 내용과 과정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명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점검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법 제35조의 4 및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3에 규정된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령이 정한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

1) 구글이 일단 책을 디지털 복제를 하되 저작자 및 출판업자에게 이러한 디지털복제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의 저작권 처리 방법이다. 구글이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를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자가 복제를 하지 않도록 구글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글과 저작권자의 지위를 뒤바뀌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이대희, 2009, 14).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유사한 해외의 입법 사례를 점검하고,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한 조사’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해외 사례와 적용 현황

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세계적인 이슈였다. 일찍이 EU는 지침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입법을 강제하면서 문화시설의 저작물 디지털화를 지원했다. 미국의 경우 음반을 제외한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불명 저작물과 관련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법정허락과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 제35조의 4의 모델이 된 EU의 지침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적 최근에 관련 규정을 도입해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2.1 EU

유로피아니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직면한 유럽은 ‘지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지침’은 2012년에 제정되었고, 2014년까지 회원국이 관련 입법 완료할 것을 강제했다. 이에 프랑스, 독일, 영국²⁾ 등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저작권

법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회원국들의 법률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지침’의 기본적인 틀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국의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교육기관, 영화 및 음성 유산 보존기관, 공영방송사이다(제1조 제1항).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첫째, 회원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방송된 문화시설에 소장된 도서, 학술지, 신문, 잡지 등 문서의 형태로 발행된 저작물이다. 둘째, 문화시설의 컬렉션에 포함된 영화나 시청각 저작물이다. 셋째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중파 방송사가 생산하여 보유한 영화, 시청각 기록물과 음반이다(이호신, 정경희, 2020, 173). 저작물의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지만, 해당 단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소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익 활동은 허용된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저작재산권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 저작재산권자가 등장하면 문화시설은 저작물 이용을 중단하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상금의 액수는 회원국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지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먼저 ‘성실한 조사(diligent search)’의 과정을 수행해서 권리자불명 저작물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 저작물이 최초로 출판되거나 방송된 회원국 내

2) 지침 제정 당시 영국은 EU 회원국이었고, 지침에 따라 2014년에 관련 입법을 완료했다.

에서(제3조 제3항), 적절한 조사처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해야 한다. 조사처의 범위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침에서 제시한 곳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제3조 제2항). 단행본은 납본 정보나 도서관 목록 또는 전거파일, 출판사 또는 저작자협회, 저작권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WATCH(Writer, Artist, Copyright Holder Information), 도서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 VIAF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s), ARROW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를 포함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와 등록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연속간행물은 ISSN, 도서관 색인과 목록, 납본, 출판협회 또는 저작자협회, 해당 저작물 관련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데이터베이스 등을 조사해야 한다.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은 앞선 모든 조사와 함께 관련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사진 대행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야 한다. 시청각저작물과 음반의 경우 법적 납본, 저작자협회, 영화 및 음성유산보존기관과 국립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 국제표준음반코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해당 저작물에 적혀 있는 정보, 그 밖의 특정 분야의 권리자를 대표하는 관련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저작권자와 그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기관에 성실한 조사에 대한 기록과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내역을 제출하고, 문화시설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국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판정한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에

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2024년 4월 현재 EUIPO에 등록된 권리자불명 저작물은 총 6,368건(검색일자, 2024.4.28.)이다. 폴란드가 3,287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네덜란드, 헝가리, 독일 등도 100건에서 800건을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등록했다. ‘지침’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그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1년 EU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성실한 조사’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참고해야 할 조사처가 너무 많거나, 오래되었거나, 아예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된 까닭에 그 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McGuinn et al., 2021).

2.2 영국

영국의 권리자불명 저작물과 관련된 조항은 EU 탈퇴를 계기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12년 EU가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입법을 강제함에 따라, 영국은 2014년에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르는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에 관련법은 폐기되었다. 현재 영국은 법정허락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를 통하여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규율하고 있다.

EU 탈퇴 이전의 법률은 ‘지침’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 비영리 목적의 기관(민간 영역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제외)이 소장한 어문저작물, 시청각저작물, 그리고 다른 저작물에 게재된 예술적 저작물 가운데 ‘성실한 조사’를 통해 저작

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추후 권리자가 나타나면 즉시 저작물 이용을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22개의 문화기관이 1,074건의 저작물을 이용했다(이 가운데 49개 기관의 96건은 이용자에 의해서 철회됐음).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연간 약 140건 정도의 저작물이 이용돼서, 그리 활발하게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은 성실한 조사에 대한 문화기관의 부담, 법률적 불확실성 그리고 저작권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영도서관에서 단행본 1권에 대해서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62~162파운드에 달하고, 조사에 소요한 시간도 사진 한 장에 3.5시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3.25~6.5시간,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3.5시간에 달한다고 한다(Sarid & Ben-Zvi, 2022, 10).

한편 2021년부터는 법정허락(영국 저작권법 제116A조)에 의해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의 종류나 이용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성실한 조사’의 과정을 거친 저작물을 영국 특허청(British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허가를 받아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비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이용도 가능하고,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실한

조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며, 작품 한편 당 20파운드, 80작품당 30파운드의 저작권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에 앞서 저작권료를 특허청에서 납부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29명이 163건의 저작물에 대해서 법정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Sarid & Ben-Zvi, 2022).

한편 ECL(영국 저작권법 제116B조)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대행하는 방법이다. 통상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리처리를 대행한다. 그렇지만 법정허락제도에 비해 높은 저작권료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런 까닭 때문인지 아직 이 제도를 이용해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2.3 이스라엘

2019년 이스라엘은 『저작권법』(ה"שנת מרכז קוח-תוכן קוח-2007)에 제27A조를 신설하여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와는 달리 비영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도 문화시설로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저작물 이용에 따르는 저작권료를 미리 지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search)’가 선행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조사’는 영국이나 EU의 ‘성실한 조사’에 비해서 다소 완화되고, 유연한 기준이다.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빌행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저작물이 오래되고 불

명료할수록 그 기준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제작자를 알 수 없는 사진에 대한 검색 기준은 제작자의 이름이 알려진 1990년대의 영화보다 훨씬 낮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권리자불명 조항에 근거한 이용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저작물에 자신의 연락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 이용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그 이용 의사를 공지해야 한다. (지정된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용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공지해도 무방하다.) 이후 권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 저작물 이용을 중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동안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이용은 이용 중단과 함께 그 동안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스라엘 법의 '합리적인 조사'의 상세한 프로세스와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도입 이후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사용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은 다양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다. 관장은 인터뷰에서 2019년 입법 이후 도서관이 수만 건의 추가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업로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이 제정된 이후 1년 동안 이스라엘 언론과 텔레비전 방송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Sarid & Ben-Zvi, 2022).

3.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상당한 조사

3.1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³⁾

법 제35조의 4는 도서관을 비롯한 국·공립 문화시설이 보관한 자료 가운데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용할 수 없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 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학술적인·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들은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서비스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국·공립문화시설은 시행령 제16조의 2에 제시되어 있다.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에 의한 광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이렇게 21개의 문화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시설에 보관된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 가운데 '상당한 조사'를 거친 이후에도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그리고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

3)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선행연구(이호신, 정경희, 2020; 최진원, 2021)에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여기서는 그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을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이나 수수료 사전 납부와 같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과 같은 행정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추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서 저작물 이용 중단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고, 그동안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협의해서 지급해야 한다(이호신, 정경희, 2020).

제31조가 도서관 관내 또는 다른 도서관 내부로 전송의 범위를 제한한 것과는 달리 이 조항은 ‘상당한 조사’를 거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외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을 규정하는 제50조와는 달리 보상금의 공탁이나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한 문화시설은 저작물 이용 사실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야 한다. 추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협의해서 지급해야 한다. 권리자가 나타난 이후에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따른 문화시설의 거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복제와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문화시설의 소장자료 디지털화와 온라인서비스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까닭이다.

3.2 ‘상당한 조사’

3.2.1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조사’의 차이

‘상당한 조사’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적법

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이 취해야 하는 핵심적인 선행 요건이다. 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화시설의 실무적인 판단에 따라 그 활용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상당한 조사’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법정허락의 요건인 제50조의 ‘상당한 노력’과 대비되는 과정이다. 법정허락은 누구나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외국인 저작물과 영리를 목적하는 이용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제35조의 4는 시행령으로 지정된 소수의 국·공립 문화시설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내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조사’는 ‘상당한 노력’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최진원, 2021). 그렇지만 시행령 제16조의 3이 규정한 ‘상당한 조사’의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실제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호신, 정경희, 2020; 최진원, 2021).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상당한 노력’은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한 조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공고, 국내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이렇게 네 가지 행위를 그 요건으로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정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나 일간신문에의 공고는 조사의 영역이 아니고 홍보를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의 과정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이다. 반면에 ‘상당한 조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여덟 가지에 이른다. 1) 해

당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 2) 저작권등록부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 3) 보상금수령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정보 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 4)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 5) 도서관 자료나 국가서지에 관한 정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 6) 콘텐츠식별체계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 7) 국내 정보통신망의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검색, 8)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단체(공공기관 포함)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를 통해 저작물의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정보를 검색. 이 여덟 가지 조사를 모두 수행해야 '상당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 <표 1>은 시행령 제18조와 제16조의 3이 규정하는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조사'의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

이다.

문화시설들은 이 여덟 가지 조사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적용 여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문화시설 입장에서 그 절차 하나하나는 모두 행정적인·재정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쇄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이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조사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문화시설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행정적 부담을 실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권리 제한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화시설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상반되는 과제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적용 범위와 주체는 가능한 제한하되, 불필요한 절차나 요구를 배제해서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1>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조사'의 기준

상당한 노력의 기준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조사의 기준 (시행령 제16조의 3)
1.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 저작물 이용자 등을 통한 조회 3. 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10일이 경과할 것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검색	1. 문화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2. 저작권등록부 3. 보상금수령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 4.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5. 국가 서지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 7.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 8.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3.2.2 '상당한 조사'의 내용: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의 실질적인 의미

법 제35조의 4는 문화시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저작재산권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거쳐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인정되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문화시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란 저작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거나 저작자는 알고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으로 변경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이용 허락을 받을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박성호, 2017).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상당한 조사의 과정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판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 등으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저작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통해 유족이 저작

재산권자가 되고, 출판 과정에서 출판사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이용 허락의 권한은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 한다. 따라서 권리자불명 저작물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만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 저작자에 관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저작자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라고 추정하거나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거소는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락처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래 거소(居所)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주소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민법 제18조 제1항)하고 있다. 주소는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률적인 장소를 지정하는 법률적인 효과를 지닌 것이다. 거소는 사람과 장소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지칭한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제20조).

법 제35조의 4에서의 거소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사전적인 의미인 '살고 있는 곳',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판정에서 거소는 이용 허락을 얻기 위해서 권리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리자의 거소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와 연락해서 이용 허락을 구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접촉

해서 이용 허락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모두 거소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블로그, SNS계정, 홈페이지, 현재 소속이나 단체 등 저작재산권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거소로 볼 수 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처로 써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거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93). 한편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관리를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 위임하고,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그의 거소로 볼 수 있다.

거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조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반면에 협소하게 설정하면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2.3 '상당한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실효성

이제부터 이 여덟 가지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실효성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조사의 내용과 실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하여 이 조사가 실효적인 조치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 자체의 실효성과 편이성은 그 활성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상당한 조사'를 위한 조사처로 제시한 각각의 사이트들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실효성을 점검한다.

제1호는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호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판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는 해당 저작물 자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라 함은 저작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이 행정 처리를 위해서 작성한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작자가 문화시설에 기증이나 기탁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제공했을 경우 연락처를 문화시설에 함께 제공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도서 등의 경우 저작물 자체에 저작자의 이름과 출판사 등이 표기되어 있다. 판권지에 저작재산권자가 표기된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흔하다. 사진 등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과 제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자의 이름과 제호가 저작물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조사의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그리고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파악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자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저작재산권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라고 의제하고, 저작자의 거소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도서의 경우 대부분 저작자 표시는 수록하고 있지만, 거소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 자체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와 거소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는 상당한 조사의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제2호는 별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재산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권리의 목적물이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리에 아무런 외부적 표상이 따르지 않는다. 등록은 그러한 권리 변동에 대하여 일종의 외부적 표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다(오승중, 2020, 1183). 따라서 저작물이 저작권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저작권등록부(<https://www.cros.or.kr>, <그림 1>)에 기재된 등록권리자가 바로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한다. 저작권등록부는 권리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함께 기재하고 있다. 저작권등록부에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면, 권리자 불명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부

에 등재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등록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이용 허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3호는 보상금수령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조회는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조의 3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 조회요청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복제 등),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등록공보 조회	
등록번호	C-2023-027624
등록일자	2023-06-30
등록부문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 (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맨처음공표연월일)
제호	토꾸
종류	미술저작물
저작자	조한울
등록원인	저작자 : 조한울, 창작 : 2008.09.27, 공표 : 2021.01.01
등록권리자	조한울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목록

<그림 1>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부 검색 화면

보상),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 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과 지급을 담당하는 단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5조와 제31조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제75조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제76조와 제76조의 2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보상금수령단체는 권리자를 대신해서 법정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권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해당 단체에서는 권리자와 그의 거소 정보를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한 조회를 통해서 권리자의 거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들 단체를 통한 정보조회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호에 따른 조회처에는 보상금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업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특정한 단체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의 일종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라고 불리는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임원선, 2022, 395-397). 저작권 신탁 관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 는 법률상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訴) 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 처분권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1996.7.12. 선고 95나 41279 판결).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저작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굳이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업체가 저작재산권자이고, 거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음악 분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어문저작물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는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방송 부문은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뉴스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문화시설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저작권신탁관리업체를 찾아서 해당 저작물의 관리 여부를 조회하거나 그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보상금수령단체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거나 저작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권리자불명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서 저작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자체가 저작재산권자이고, 그 연락처 자체가 거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4호는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정보를 조회할 것을 규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s://www.findcopyright.or.kr>)⁴⁾은 저

4)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과 저작권거래소를 통합하여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권 위탁관리업자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집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와 저작권등록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권리자를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은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 연도, 제작연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정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렇지만 실제 검색을 수행한 결과 <그림 2>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원하는 정보를 빠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 저작자에 관한 정보이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저작재산권자로 갈음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바로 거소 정보에 해당하지만, 신탁관리업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는 없다.

제5호는 「도서관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서지에 관한 정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을 규정 한다. 「도서관법」 제3조 제2호는 ‘도서관 자료’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

순번	도서명	저작자
1	매밀꽃필무렵	교보문고

<그림 2>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의 정보조회 결과 화면

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문화시설은 도서관 자료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해당 저작물이 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국가서지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가서지>(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10501000000.do)로 서비스하고 있다. 자료의 언어나 대상 연령층과 상관없이, 국

내에서 발행한 출판물은 모두 국가서지의 수록 대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종합목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목록을 종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가서지를 실제로 검색해서 확인한 결과 (<그림 3> 참조),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의 이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작자의 이름에 불과하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라고 추정하거나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작자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만, 거소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서지 검색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단편선

제작/저자사항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단편선 / 지은이: 이효석 ; 엮은이: 백지혜
발행사항	서울 : 현대문학, 2010
형태사항	442 p.; 22 cm
총서사항	(한국현대문학전집 ; 5)
주기사항	"작가 연보" 수록 내용: 노령 근해 - 상록 - 북국사신 - 돈 - 성화 - 산 - 들 - 메밀꽃 필 무렵 - 개살구 - 거리의 목가 - 장미 병들다 - 해바라기 - 여수 - 은은한 빛 - 하얼빈 - 일요일 - 풀잎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2754701(세트) 04810 ISBN 9788972754756 04810: 12000
분류기호	한국심진분류법-> 813.61 뉴이심진분류법-> 895.733
주제명	한국 단편 소설[韓國短篇小說] 한국 현대 소설[韓國現代小說]
ISBN	N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수록연도	2012

<그림 3> 국가서지를 통한 정보 조회 결과 화면

제6호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마다 유일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 표준이다. 2012년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 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UCI 홈페이지 (<https://www.uci.or.kr>)에서는 2024년 4월 현재 약 40만 건의 콘텐츠에 대한 식별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 페이지는 개별 UCI 등록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콘텐츠의 제목, UCI 코드, 기여자 정보, 등록일, 파일형태, 파일형식, 자원의 유형을 간략 정보로 제공한다. 콘텐츠

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등록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항목 가운데 기여자 정보는 콘텐츠의 생산에 기여한 저자, 편집자, 출연자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 부분을 저작자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작자에 관한 정보이지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는 아니다. 저작물(콘텐츠)을 등록한 기관이 표시되어 있지만, 등록기관이 저작재산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곳에서 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자를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확인할 수는 없다(〈그림 4〉 참조).

제7호는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한다. 다른 각 호의 요건이 대상을 특정한 것과는 달리, 이 호는 대상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

전체 (6,281건)	문서 (422건)	이미지 (3,200건)	영상 (0건)	음원 (308건)	기타 (1건)
UCI 제목: 메밀꽃 편 무렵/城隍堂 UCI 코드: G701:B-0010657362 기여자 정보: 이효석 등록일: 2023-07-28 파일형태: 디지털 파일형식: 텍스트 자원유형: 기타 Format					
표준유형별보기	UCI코드복사	콘텐츠정보 ▾	보기		
표준유형별보기	UCI코드복사	선택 ▾	보기		
표준유형별보기	UCI코드복사	선택 ▾	보기		

〈그림 4〉 UCI 조사 결과 화면

지 않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국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물을 검색하면, 여러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저자가 저작재산권자라고 추정하는 것 이외에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제8호는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1호(2020.7.10. 제정)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조사 대상 단체와 세부적인 조사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하여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을 통하여 제목 및 저자의 성명으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작가 등) 또는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 영화와 관련 저작물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를 통해 제목 및 저자의 성명으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작가 등) 또는 제작사나 감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 연극

저작물 및 이와 관련된 영상저작물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제목과 저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이호신, 정경희, 2020). <표 2>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8호에 따른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시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1~3개의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저작물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상세하게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당 사이트들을 조사한 결과는 과연 이 조사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 정보와는 상관없는 사항들이 여러 차례 조사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의 소장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작품의 소유와 저작권 보유 여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소장처는 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로, 이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영화저작물의 경우에는 영화의 영상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등 실제로 영화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KMDb를 통해서 제작자와 감독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00조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자일 개연성이 높다. 하지

〈표 2〉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8호’에 따른 조사 요구사항

저작물의 종류	지정단체와 서비스	조회처	조사요구사항
어문저작물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	저작재산권자 소속 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http://www.k-artmarket.kr	저작재산권자 작품의 소장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www.daarts.or.kr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http://artsbank.go.kr	
영화저작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	저작재산권자 제작사나 감독
연극저작물 및 관련 영상저작물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http://www.archive.gugak.go.kr	저작재산권자 해당저작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www.daarts.or.kr	

만 영화감독은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이다. 저작인접권자를 대표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감독에 관한 정보는 저작재산권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다. 연극저작물과 관련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DA-Arts나 국악아카이브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해당 저작물 자체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DA-Arts나 국악아카이브에서 해당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가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보유한 저작물이 권리자불명 상태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도 권리자불명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건은 국립국악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극 등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가 파악되었다고 의제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것이다.

3.2.4 조사 결과의 종합과 문제점

법 제35조의 4를 적용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이 수행해야 하는 ‘상당한 조사’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16조의 3이 제시하는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할 방법을 망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파악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의

핵심이다. 그러나 시행령의 조사 대상 대부분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다. 또한 조사 항목 가운데에는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표 3〉 참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은 갖추지 못한 채, 문화시설들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의 '상당한

'조사'는 문언상으로는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사는 저작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지만, 상속이나 양도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서는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4호에

〈표 3〉 시행령 제16조의 3이 규정한 조사처에서 제공하는 정보

	조사 대상	권리자		거소정보	비고
		저작자	저작권자		
제1호	문화시설에 소장된 도서 등(오프라인)	O	◐	◐	도서 등에 표기된 경우 일부 확인 가능
제2호	저작권등록부	O	O	O	등록 정보에 거소 정보 포함
제3호	보상금수령단체	O	O	O	보상금 분배 과정 및 회원 정보로 거소 정보 확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O	O	O	신탁관리단체 자체가 거소정보에 해당
제4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O	◐	◐	연계된 정보에 따라서 차이
제5호	도서관자료(오프라인)	O	◐	◐	도서 등에 표기된 경우 일부 확인 가능
제6호	국가서지	O	X	X	거소 정보 관리하지 않음
제7호	콘텐츠 식별체계	O	X	X	거소 정보 관리하지 않음
제7호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	O	X	X	거소 정보 관리하지 않음
제8호	어문저작물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O	X	X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O	X	X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O	X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O	X	X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O	X	X	거소 정보 관리하지 않음 작품의 소장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영역임
	영화저작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레이터베이스	O	X	X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O	X	X	거소 정보 관리하지 않음 감독은 저작인접권자로 그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어, 저작재산권자 파악과 전혀 관련 없음
	연극저작물 및 관련 영상저작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O	X	X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회에서는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서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제3호에 따른 조사처가 제공하는 정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조사처에 대한 중복 조사이다. 이외 제5호에서부터 제8호까지의 조사 대상처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시행령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소정보’에 대한 조사 요구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거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사정은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제2호의 저작권 등록부는 주소 가운데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고, 등록 자체가 제3자에게 저작물의 권리를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소 정보라고 갈음할 수가 있다. 제3호의 보상금수령단체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온라인상에서 거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해당 단체가 회원들의 권리를 대행하기 때문에 해당 단체 자체가 거소 정보이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온라인상에서 거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사처에서 온라인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가 없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대상처 가

운데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작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과정이다.

셋째,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와는 전혀 무관한 내역을 조사할 것을 요구해서 불합리하다. 제8호에 따른 조사는 작품의 소장처, 영화 감독 정보, 해당 저작물에 관한 정보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조사를 강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도 아닐뿐더러, 이를 통해서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파악할 방법도 전혀 없다.

넷째, 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시기에 따라 유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20년 전의 거소를 현재의 거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4. 개선 방안과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행령이 제시한 조사 방법 가운데 일부(제2호 및 제3호)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명하는 데 실제로 효과를 지닌 것이지만, 이를 제외한 각호의 요건은 모두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상당한 조사’의 과정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프로세스를 문화시설에 의무로 부과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 등록의 활성화와 저작권집중관리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문제는 권리 발생에 아무런 요식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권리 부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어떤 저작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관련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법의 관련 문언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개정하여 조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따라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정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사의 과정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명하는 과정이다. 이용 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연락처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구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저작재산권자의 연락처(거소)이다. 연락처(거소)는 저작재산권자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고, 저작재산권자에게 종속되어 존재하는 정보이다.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

하는 곳을 조사 대상처로 선정해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35조의 4는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만 파악해도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조사'의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시행령 제16조의 3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수의 기관을 조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런 법조문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이 규정한 것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곳을 조사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을 규정하는 법 제50조가 요구하는 '상당한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법 제35조의 4와 제50조 모두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명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정하는 절차는 두 조항이 다소 상이하다. 제50조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검색해야 한다. 그러나 제35조의 4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여덟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사 가운데 제2호(저작권등록부)와 제3호(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제외한 항목들은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실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실효를 갖추지 못한 조사 항목을 추가해서, 문화시설

에 불필요한 부담을 강제하면서 ‘상당한 조사’를 ‘상당한 노력’과 구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정하는 조사는 제35조의 4와 제50조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EU를 탈퇴하기 이전의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정하는 조사의 절차는 동일하게 하지만, 이용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용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책임과 까다로운 요건을 부담하게끔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 법이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조사’를 구분한 것도 마찬가지 의도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문화시설에서의 이용과 법 정허락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서로 달리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비해서 완화된 요건으로 ‘상당한 조사’라는 표현을 제시했지만, 시행령은 ‘상당한 노력’보다 오히려 까다롭게 ‘상당한 조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불필요한 조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입법의 의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행령 제16조의 3 제5호부터 제8호의 조항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의 유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 가운데에는 너무 오래전에 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저작물의 발행 시기와 정보가 작성된 시점을 고려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발행 연도 등에 따라서 조사의 범위나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이스라엘 저작권법의 ‘합리적 조사’는 비록 그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작물 이용의 목적, 성격, 발행 시기에 따라서 조사 절차에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5. 닫는 말

법 제35조의 4는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와 온라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상당한 조사’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다. 하지만 이 조사의 과정이 문화시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그 활발한 적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에도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지만, 조사 과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그리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6조의 3이 정한 각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사에서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했고, 불필요한 조사 항목까지 포함되어 아무런 효과는 없으면서 문화시설에 과중한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거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보호의 대상이어서 해당 조사를 통해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범위를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명확하게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시행령 제16조의 3 제5호부터의 제8까지를 삭제하고, 법정허락과 동일한 조사 수준으로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발행 시기와 정보가

작성된 시기에 따라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지침'을 비롯해서 우리 법의 관련 조항은 모두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지만, 조사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은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도서관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2). 도서관 소장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온라인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서울: 국립 중앙도서관.
- 박성호 (2017). 저작권법 (제2판 개정판). 서울: 박영사.
- 오승종 (2020). 저작권법 (제5판). 서울: 박영사.
- 이대희 (2009). 구글 도서검색과 인터넷상 도서 이용의 과제. *정보법학*, 13(3), 135-163.
- 이호신, 정경희 (2020).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정보관리학회지*, 37(3), 107-131.
<http://doi.org/10.3743/KOSIM.2020.37.3.107>
- 임원선 (2022).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7판).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진원 (202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정보법학*, 25(1), 69-100.
- McGuinn, J., Sproge, J., Omersa, E., Borrett, C., Borghi, M., & Guibault, L. (2021).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Orphan Works Directive (2012/28/EU).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dx.doi.org/10.2759/32123>
- Sarid, E. & Ben-Zvi, O. (2022). A theoretical analysis of orphan works.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40(3). Available:
<https://cardozoelj.com/a-theoretical-analysis-of-orphan-works/>.

- Schroff, W., Favale, M., & Bertoni, A. (2017). The impossible quest - Problems with diligent search for orphan works, 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48, 286-304. <https://doi.org/10.1007/s40319-017-0568-z>
- Zeinstra, M. (2016, February 16). Research: Orphan Works Directive does not Work for Mass Digitisation, COMMUNIA. Available: <https://communia-association.org/2016/02/16/orphan-works-directive-does-not-work/>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e, Jin-Won (2021). Study o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 The use of orphan works in at-home library and cultural institutes. Journal of Korean Information Law, 25(1), 69-100.
- Lee, Dae-Hee (2009). Google book search and challenges to the use of books on internet. Journal of Korean Information Law, 13(3), 135-163.
- Lee, Hosin & Joung, Kyounghee (2020). Possibility of transmission for works beyond library fence: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107-131.
<http://doi.org/10.3743/KOSIM.2020.37.3.107>
- Lim, Wonsun (2022). Copyright Law of Korea (7th ed.). Jinju: Korea Copyright Commissi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A Study on Ways to Expand Online Services for 'Orphan Works' Held by Librari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Oh, Seungjong (2020). Copyright Act (5th ed.). Seoul: Bakyoungsa.
- Park, Sungho (2017). Copyright Act (2nd ed.). Seoul: Bakyoungsa.